

2025년 제10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
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1 월 13 일

여 수 시 장 김기민



여수시 규칙 제868호

붙임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

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,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간병비 지원) 시장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애 1회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
2. 신청일 기준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누적 봉사시간 1,000시간 이상인 자

제17조(종전의 제16조) 중 “제18조”를 “제19조”로 한다.

제19조(종전의 제18조) 중 “제19조”를 “제2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의2(자원봉사자 사기진작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<u>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와 자원봉사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문화·체육시설</u></p> <p>2. <u>공영주차장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</u>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5조의2(자원봉사자 사기진작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간병비 지원) <u>시장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애 1회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1년</u></p>

